



의안번호	제 2011 - 16 호
의 결 연 월 일	2011. 9. 16. (제 36 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1. 사건 접수	1
2. 처리 현황	7
II. 위원장 국회 현황 보고	13
1. 개요	13
2. 주요 보고내용	13
III. 양형위원 워크숍 개최	14
1. 필요성	14
2. 일시·장소	14
3. 참석대상	14
4. 주제	14
5. 추진 경과	15
IV. 2010 연간보고서 발간·배포	16
1. 개요	16
2. 추진 경과	16
3. 제작 내역	16
4. 국회 보고	16
5. 기타 기관 배부	17

V. 전문위원 업무 지원	19
1. 회의 지원	19
VI. 전문위원 위촉 및 위촉식 개최	20
1. 개요	20
2. 추진 내역	20
3. 전문위원 위촉식 개최	22
VII.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23
1. 개요	23
2. 양형자료조사 계획	23
3. 양형자료조사 경과	24
VI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25
1. 인터넷 홈페이지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25
2.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26
<input type="checkbox"/> 별지	전문위원 후보 프로필
<input type="checkbox"/> 별첨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대한한의사협회)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사건 접수

○ 8개 범죄 양형기준이 시행에 들어간 2009. 7. 1. 부터 2011. 5. 31. 까지 법원에 접수된 8개 범죄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단일범 내지 동종경합범 ◆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살인 죄	강도살인미수	0	0	1	0	-	1
	살인	125	219	69	0	-	413
	살인미수	188	324	127	1	-	640
	존속살해	10	16	8	0	-	34
	존속살해미수	6	14	4	0	-	24
	전체	329	573	209	1	-	1,112
뇌물 죄	뇌물공여	248	526	63	56	10	903
	뇌물수수	139	323	40	59	0	561
	부정처사후수뢰	8	11	0	3	0	22
	수뢰후부정처사	4	15	4	1	0	24
	제3자뇌물교부	10	31	3	4	0	48
	제3자뇌물취득	3	22	5	5	0	35
	특가법(뇌물)	34	75	28	1	0	138
	전체	446	1,003	143	129	10	1,731
성 범 죄	강간	37	86	25	0	0	148
	강간살인	1	0	-	-	-	1
	강간상해	46	121	45	0	0	212
	강간치사	0	1	-	-	-	1
	강간치상	142	255	70	0	0	467
	강도강간	6	3	2	0	0	11
	강제추행	282	631	24	98	133	1,168
	강제추행상해	13	29	12	0	0	54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강제추행치상	53	83	25	2	0	163
	미성년자의제강간	6	13	2	0	0	2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1	-	-	-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2	22	2	0	0	4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0	1	0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94	164	9	0	0	367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2	1	1	0	0	4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43	41	3	0	0	87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59	38	-	-	-	97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58	54	11	0	2	125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8	7	1	0	0	16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117	60	6	0	0	183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1	17	2	0	0	4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8	33	4	0	0	6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4	6	-	-	-	1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	5	1	0	0	11
	성폭력범죄(특수강간)	122	104	8	0	0	234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1	21	8	0	0	60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0	8	1	0	0	19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28	47	1	0	0	7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0	2	-	-	-	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185	86	0	3	274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48	30	0	0	78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61	27	0	0	8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52	25	6	1	84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0	5	2	0	0	7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132	56	0	0	188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6	11	0	0	17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23	16	0	0	39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0	5	0	0	5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4	2	0	0	6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103	67	0	0	17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13	11	0	0	2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4	8	0	0	1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0	40	38	2	0	8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0	0	5	0	0	5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550	194	7	25	776
	준강간	27	84	23	0	0	134
	준강간치상	3	8	5	0	0	16
	준강제추행	64	139	7	33	14	257
	준강제추행치사	0	0	1	0	0	1
	준강제추행치상	2	0	2	1	0	5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227	61	-	-	-	288
	전체	1,661	3,371	885	149	178	6,244
강 도 죄	강도	41	64	23	0	-	128
	강도살인	6	6	1	0	-	13
	강도상해	251	333	72	0	-	656
	강도치사	0	4	-	-	-	4
	강도치상	16	15	10	0	-	41
	준강도	37	42	18	1	-	98
	준특수강도	5	7	2	0	-	14
	특가법(강도)	5	4	1	0	-	10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2	2	0	-	6
	특수강도	146	233	84	0	-	463
	전체	509	710	213	1	-	1,433
횡 령 · 배 임 죄	배임	342	437	5	122	22	928
	업무상배임	167	332	6	71	26	602
	업무상횡령	1,132	1,869	16	453	130	3,600
	특경가법(배임)	90	162	64	1	0	317
	특경가법(횡령)	100	246	99	1	0	446
	횡령	1,148	1,738	7	375	218	3,486
	전체	2,979	4,784	197	1,023	396	9,379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위 증 죄	모해위증	8	12	0	3	0	23
	위증	811	1,300	2	314	130	2,557
	위증교사	50	198	2	70	3	323
	전체	869	1,510	4	387	133	2,903
무 고 죄	무고	966	1,620	17	412	185	3,200
	특가법(무고)	5	3	-	-	-	8
	전체	971	1,623	17	412	185	3,208
총 계		7,764	13,574	1,668	2,102	902	26,010

◆ 이중경합범(8개 범죄가 대표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살 인 죄	강도살인	0	0	4	-	-	4
	강도살인미수	0	0	2	-	-	2
	살인	59	117	45	-	-	221
	살인미수	81	110	45	-	-	236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0	1	-	-	1
	존속살해	10	7	7	-	-	24
	존속살해미수	1	3	1	-	-	5
	전체	151	237	105	-	-	493
뇌 물 죄	뇌물공여	61	219	55	45	2	382
	뇌물수수	29	135	36	26	0	226
	부정처사후수뢰	4	21	4	2	0	31
	수뢰후부정처사	6	25	5	2	0	38
	제3자뇌물교부	4	21	3	4	0	32
	제3자뇌물취득	1	14	4	4	0	23
	특가법(뇌물)	23	66	15	1	0	105
전체	128	501	122	84	2	837	
강간	강간	61	109	46	0	0	216
	강간살인	1	2	1	0	0	4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성 범 죄	강간상해	45	68	23	0	0	136
	강간치사	0	1	-	-	-	1
	강간치상	56	87	30	0	0	173
	강도강간	14	14	4	0	0	32
	강제추행	145	320	42	74	59	640
	강제추행상해	4	8	3	0	0	15
	강제추행치상	22	51	8	1	0	82
	미성년자의제강간	2	9	-	-	-	1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2	1	0	0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	6	4	0	0	1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0	1	0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65	111	8	0	0	184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3	4	-	-	-	7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30	31	2	0	0	63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47	32	1	0	0	80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8	9	1	0	0	18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8	7	-	-	-	15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70	56	8	0	0	134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5	32	2	0	0	59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0	0	1	0	0	1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7	27	22	0	0	66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4	-	-	-	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	12	6	0	0	20
	성폭력범죄(특수강간)	84	80	4	0	0	168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100	68	12	0	0	180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3	10	2	0	0	25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21	16	-	-	-	3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75	24	1	0	100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35	15	0	0	50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31	11	0	0	4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12	7	4	0	23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0	7	6	0	0	13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58	26	1	0	85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27	17	0	0	44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14	12	0	0	26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1	1	0	0	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82	57	0	0	139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59	35	0	0	9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12	8	0	0	2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0	11	12	1	0	2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0	1	3	0	0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235	106	2	2	345
	준강간	11	27	6	1	0	45
	준강간치상	1	6	-	-	-	7
	준강제추행	11	26	4	4	0	45
	준강제추행치상	1	1	-	-	-	2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78	28	-	-	-	106
	전체	948	1,924	582	89	61	3,604
강 도 죄	강도	62	90	34	-	-	186
	강도살인	15	30	9	-	-	54
	강도상해	233	357	118	-	-	708
	강도치사	1	4	1	-	-	6
	강도치상	16	32	6	-	-	54
	준강도	20	48	31	-	-	99
	준특수강도	2	9	1	-	-	12
	특가법(강도)	3	8	3	-	-	14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4	7	6	-	-	17
	특강법(특수강도)	2	0	-	-	-	2
	특수강도	176	321	184	-	-	681
전체	534	906	393	-	-	1,833	
횡 령	배임	34	145	2	38	5	224
	업무상배임	114	318	26	81	14	553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 배 임 죄	업무상횡령	388	915	72	288	44	1,707
	특경가법(배임)	60	171	88	1	0	320
	특경가법(횡령)	95	267	96	4	0	462
	횡령	286	836	29	237	45	1,433
	전체	977	2,652	313	649	108	4,699
위 증 죄	모해위증	4	6	0	1	0	11
	위증	51	108	4	39	5	207
	위증교사	0	31	1	10	0	42
	전체	55	145	5	50	5	260
무 고 죄	무고	177	461	23	158	22	841
	특가법(무고)	1	4	1	1	0	7
	전체	178	465	24	159	22	848
총 계		2971	6,830	1,544	1,031	198	12,574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2. 처리 현황

- 2009.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8개 범죄 사건(단일범, 경합범)으로서 2011. 5. 31. 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범죄군별 처리건수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살인죄	수	286	0	0	286
		비율	100.0	0.0	0.0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09년 하반기	뇌물죄	수	46	73	1	120
		비율	38.3	60.8	0.8	100.0
	성범죄	수	960	96	60	1,116
		비율	86.0	8.6	5.4	100.0
	강도죄	수	563	1	0	564
		비율	99.8	0.2	0.0	100.0
	횡령·배임죄	수	101	990	286	1,377
		비율	7.3	71.9	20.8	100.0
	위증죄	수	6	310	41	357
		비율	1.7	86.8	11.5	100.0
	무고죄	수	6	252	92	350
		비율	1.7	72.0	26.3	100.0
	전체	수	1,968	1,722	480	4,170
		비율	47.2	41.3	11.5	100.0
2010년	살인죄	수	736	0	0	736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죄	수	548	512	15	1,075
		비율	51.0	47.6	1.4	100.0
	성범죄	수	3,294	366	269	3,929
		비율	83.8	9.3	6.8	100.0
	강도죄	수	1,421	2	0	1,423
		비율	99.9	0.1	0.0	100.0
	횡령·배임죄	수	719	4,437	1,097	6,253
		비율	11.5	71.0	17.5	100.0
	위증죄	수	41	1,272	192	1,505
		비율	2.7	84.5	12.8	100.0
	무고죄	수	45	1,311	339	1,695
		비율	2.7	77.3	20.0	100
	전체	수	6,804	7,900	1,912	16,616
		비율	40.9	47.5	11.5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1년 1월~5월	살인죄	수	276	0	0	276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죄	수	273	123	9	405
		비율	67.4	30.4	2.2	100.0
	성범죄	수	1,309	160	126	1,595
		비율	82.1	10.0	7.9	100.0
	강도죄	수	534	0	0	534
		비율	100.0	0.0	0.0	100.0
	횡령·배임죄	수	344	1,731	413	2,488
		비율	13.8	69.6	16.6	100.0
	위증죄	수	6	482	80	568
		비율	1.1	84.9	14.1	100.0
	무고죄	수	27	538	129	694
		비율	3.9	77.5	18.6	100.0
	전체	수	2,769	3,034	757	6,560
		비율	42.2	46.3	11.5	100.0

☞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살 인 죄	살인	105	315	109	529
	살인미수	170	382	152	704
	존속살해	7	26	8	41
	존속살해미수	4	13	7	24
	전체	286	736	276	1,298
뇌 물 죄	뇌물공여	59	558	213	830
	뇌물수수	46	280	107	433
	부정처사후수뢰	2	26	5	33
	수뢰후부정처사	2	27	11	40
	제3자뇌물교부	3	50	6	59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제3자뇌물취득	4	32	10	46
	특가법(뇌물)	4	102	53	159
	전체	120	1,075	405	1,600
성 범 죄	강간	38	128	42	208
	강간살인	1	0	1	2
	강간상해	49	175	70	294
	강간치사	0	2	0	2
	강간치상	104	313	97	514
	강도강간	4	24	5	33
	강제추행	127	548	259	934
	강제추행상해	11	39	21	71
	강제추행치상	40	115	44	199
	미성년자의제강간	3	16	3	22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4	0	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9	19	4	3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0	1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24	302	43	469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4	3	1	8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40	83	12	135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50	90	4	144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7	82	11	120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11	18	3	32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115	168	14	29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6	57	11	94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3	69	16	108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	7	3	1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4	10	9	23
	성폭력범죄(특수강간)	91	165	13	269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60	132	9	201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1	21	1	33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7	54	3	64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0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154	91	245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1	1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40	33	73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0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59	20	79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27	29	56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0	9	4	13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137	65	20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21	15	36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26	25	5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4	4	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56	59	11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45	25	7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7	4	1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0	17	25	42
	성폭력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0	20	20
	성폭력특례법(강간등)	0	0	1	1
	성폭력특례법(강간등상해)	0	0	9	9
	성폭력특례법(강간등치상)	0	0	6	6
	성폭력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0	10	10
	성폭력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0	18	18
	성폭력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0	3	3
	성폭력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0	7	7
	성폭력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0	2	2
	성폭력특례법(특수강간)	0	0	7	7
	성폭력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0	9	9
	성폭력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0	3	3
	성폭력특례법(특수준강간)	0	0	3	3
	성폭력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0	0	3	3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419	325	744
	준강간	7	56	15	78
	준강간치상	2	10	3	15
	준강제추행	32	104	38	174
	준강제추행치상	1	3	1	5
	청소년성보호법	1	0	0	1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0	4	4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92	88	4	184
	전체	1,116	3,929	1,595	6,640
강 도 죄	강도	66	159	56	281
	강도살인	10	33	11	54
	강도상해	238	570	209	1,017
	강도치사	1	4	4	9
	강도치상	15	54	9	78
	준강도	43	92	40	175
	준특수강도	8	14	3	25
	특가법(강도)	4	12	6	22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9	5	16
	특강법(특수강도)	0	1	0	1
	특수강도	177	475	191	843
	전체	564	1,423	534	2,521
횡 령 · 배 임 죄	배임	111	513	197	821
	업무상배임	71	439	204	714
	업무상횡령	602	2,484	927	4,013
	특경가법(배임)	27	190	80	297
	특경가법(횡령)	33	334	170	537
	횡령	533	2,293	910	3,736
	전체	1,377	6,253	2,488	10,118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5월	전체
위 증 죄	모해위증	3	14	6	23
	위증	296	1,260	460	2,016
	위증교사	58	231	102	391
	전체	357	1,505	568	2,430
무 고 죄	무고	349	1,687	692	2,728
	특가법(무고)	1	8	2	11
	전체	350	1,695	694	2,739
총 계		4,170	16,616	6,560	27,346

II. 위원장 국회 현황 보고

1. 개요

- 2011. 6. 16. 1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06호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01회(임사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2011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을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함

2. 주요 보고내용

- 양형위원회 설립
- 양형위원회 현황
- 2011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 향후 일정

III. 양형위원 워크숍 개최

1. 필요성

- 전문위원들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3기 양형기준에 관한 양형위원과 전문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기회 마련
- 워크숍을 통하여 양형위원 및 전문위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마련

2. 일시 · 장소

- 2011. 9. 16.(금) ~ 9. 17.(토) 【1박 2일】
- 설악대명리조트(강원도 고성 소재)

3. 참석대상

가. 양형위원

- 양형위원회 위원장 포함 13명

나. 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포함 15명

다. 운영지원단

- 워크숍 진행요원 : 11명
 - 단장, 기획운영과장, 통계분석과장 및 직원
 - 속기사 1명

4. 주제

- 제3기 양형기준 초안 심의
- 양형위원회 향후 일정 논의

5. 추진 경과

- 2011. 6. 14. 양형위원 워크숍 계획 보고
- 2011. 7. 21. ~ 7. 22. 양형위원 워크숍 개최지 답사
- 2011. 8. 5. 양형위원 워크숍 예상 일정 위원장 보고
- 2011. 9. 16. 양형위원 워크숍 및 양형위원회 제36차 회의

IV. 2010 연간보고서 발간 · 배포

1. 개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10 규정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매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연간보고서의 발간을 통하여 양형위원회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정리하고 대외 홍보에 활용하여 양형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 2011. 2. 9. 양형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2010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 의 건’(의안번호 제2011-4호) 의결

2. 추진 경과

- 2011. 2. 9. 2010년도 연간보고서 발간 계획안 의결
- 2011. 6. 24. 초안 완성 및 수정 작업
- 2011. 7. 6. 견본 제작 및 수정
- 2011. 7. 11. 연간보고서 수정본 위원장 보고
- 2011. 7. 22. 연간보고서 제작
- 2011. 8. 10. 국회보고 및 배부 완료

3. 제작 내역

- 발간 부수 : 1,800부
- 책자 규격 및 분량
 - 16절(1도 인쇄, 46배판)
 - 455쪽

4. 국회 보고

- 2011. 8. 10. 국회의원 각 실 방문하여 연간보고서 인편으로 배송 완료

5. 기타 기관 배부

- 배부원칙

- 양형기준 책자의 적정한 배포 및 관리
- 예산낭비 방지 및 활용의 극대화

- 배부기준

- 홍보가치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높은 기관에 우선 배부
- 필요적 이용기관과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배부
- 사법발전에 기여하거나 자료가치를 높이는 부서에 배부

- 배부처

- 법원(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등)
- 헌법재판소
- 행정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검찰청
- 지방자치단체(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등)
- 유관기관(대한변협,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 학회 등
-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 언론기관(법조출입 30개 언론사 등)
- 도서관(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 배부표

- 구체적 배부내역은 아래 배부 총괄표와 같음

【2010 연간보고서 배부 총괄표】

배부처		구 분	수 량	비 고
법 원			365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특허)법원, 지방법원, 지원
국 회			324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 배송(국회의장·부의장, 국회의원, 법사위 행정실, 국회도서관, 국회사무총장 등)
헌법재판소			14	헌법재판관, 사무처장·차장, 도서관
행 정 부			110	대통령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법제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기록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검 찰 청			134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지방자치단체			32	16개 광역자치단체
유관기관			126	대한변협,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학 회 등			29	한국법학교수회, 한국교정학회, 한국범죄방지재단, 한국법학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학회
시민단체 등			42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한국YWCA연합회, 민변, 시민과 함께하는변호사들, 전경련, 참여연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헌법을 생각하는변호사모임
언론기관			204	대법원, 국회, 대검찰청 출입기자 등
도서관		대학도서관	108	54개 주요대학도서관 각 2부
		공공도서관	45	국립중앙도서관 5부, 전국 20개 주요 공공도서관 각 2부
양형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54	전직 위원 및 전문위원 포함
	운영지원단		208	보존용 및 예비용
총 계			1,800	

V. 전문위원 업무 지원

1. 회의 지원

- 운영지원단(기획운영과, 통계분석과)은 전문위원 전체회의 및 팀별회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회의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1팀회의	제35차	2011. 8. 8. 11:00	○ 폭력,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
	제36차	2011. 8. 22. 16:30	○ 폭력,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 및 논의
2팀회의	제28차	2011. 8. 12. 17:00	○ 교통,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41차	2011. 7. 19. 16:30	○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공청회 및 팀별 분장
	제42차	2011. 9. 5. 16:00	○ 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

VI. 전문위원 위촉 및 위촉식 개최

1. 개요

- 2011. 8. 19.자로 강우예, 김혜정, 범현 전문위원의 임기만료
- 2011. 9. 5.자로 심재철 전문위원의 임기 만료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2. 추진 내역

가. 고려사항

- 연구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분위기 쇄신
 - 종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제3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정기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전문위원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 그동안의 전문위원의 연구 성과와 활동내역을 객관적으로 검토·평가하여 개선방안 모색
- 전문위원 선정원칙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강화
 -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
 - 다양한 전공분야 안배

- 추천 기관 또는 위원 의견 존중

나. 위촉 방안

(1) 연임 위촉

- 강우예 한국해양대학교 조교수(2011. 8. 19.자 연임)
- 김혜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11. 8. 19.자 연임)
- 범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2011. 8. 19.자 연임)
- 심재철 대검찰청 연구관(2011. 9. 5.자 연임)

(2) 신규 위촉

-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11. 8. 8.자 위촉)
- 이수정 경기대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2011. 7. 25.자 위촉)
-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11. 8. 8.자 위촉)
-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2011. 7. 18.자 위촉)

※ 신임 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 전문위원 후보 프로필
기재 참조

다. 진행 경과

- 2011. 7. 20. 최진녕 전문위원 위촉(안) 결재 보고
- 2011. 7. 25. 이수정 전문위원 위촉(안) 결재 보고
- 2011. 8. 8. 강우예, 김혜정, 범현, 심재철 전문위원 연임 및 안효질, 정순섭 전문위원 신규 위촉(안) 결재 보고
- 2011. 9. 16. 전문위원 위촉식 개최

라. 전문위원 구성(안)

구분	팀장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교수	교수	교수
수석 전문위원	최동렬							
총괄팀	최동렬	홍준호	심재철					
제1팀	홍준호	/	조석영	최진녕	강우예	안효질	이수정	이진국
제2팀	심재철	정준화	/	범 현	김혜정	이정훈	이주원	정순섭

3. 전문위원 위촉식 개최

- 일 시 : 2011. 9. 16.(금) 16:40
- 장 소 : 설악대명리조트 금강동 6층 장미홀
- 참석범위 : 위원장, 상임위원, 양형위원, 수석전문위원, 운영지원단장,
기획운영과장
- 위촉대상자 :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이수정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Ⅶ.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1. 개요

- 위원회 35차 회의(2011. 6. 14.)에서 제3기 위원회가 설정할 양형기준 대상범죄가 의결됨에 따라 2011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양형기준 연구에 본격 착수
 - 대상범죄 : 교통, 폭력(상해, 폭행, 협박), 공갈, 방화, 선거, 조세, 금융·경제, 지식재산권범죄
- 대상범죄에 대한 기존의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을 토대로 적정한 추가 양형자료조사 및 새로운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양형기준 연구시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자료를 제공
 - 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범죄유형의 세분화, 범죄유형별 기준형량,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 추출, 양형인자별 가중치 등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통계자료 추출

2. 양형자료조사 계획

가. 조사 대상범죄

- 전국의 법원에서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 판결 선고된 합의, 단독 사건 중 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 조사 기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인 교통, 폭력, 금융·경제, 지식재산권 범죄군으로 한정
 - 5차 공청회 대상범죄 : 교통, 폭력, 금융·경제, 지적재산권범죄
 - 6차 공청회 대상범죄 : 공갈, 방화, 선거, 조세범죄

나. 조사 내용

(1) 조사건수

- 4,780건(필요 조사건수에 예비 조사건수 10% 포함)

- 단일범 위주로 죄명별, 사건번호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

(2) 조사 대상 범원(검찰)

- 전국 주요 지방법원(지방검찰청) 및 지원(지청)

다. 조사기간

- 2011. 8. 8. ~ 9. 9. (24일)

라. 조사방법

(1) 분석관 1인당 조사건수

- 조사보조요원의 보조를 전제로 양형자료분석관 1인당 1일 조사건수는 16건(분석관 1인당 적정 조사건수는 10건)

(2) 조사방법

- 조사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조사표 및 판결문을 미리 준비함
- 분석관 2~3인을 1개 팀으로 구성하여 조사
- 각 팀별로 조사대상 범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출장하여 사건리스트에 해당하는 형사사건기록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함

3. 양형자료조사 경과

- 2011. 7. 18. ~ 7. 29. 판결문 추출
- 2011. 7. 25.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실시 계획 위원장 보고
- 2011. 8. 22. ~ 9. 15 조사 자료 입력
- 2011. 9. 19. ~ 9. 23. 입력 자료 수정
- 2011. 9. 26. ~ 10. 14. 양형자료분석
- 2011. 10.말경 위원회 보고

VI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인터넷 홈페이지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 의견

순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1. 5. 22.	○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성범죄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
2	2011. 5. 23.	○ 자신의 전과사실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다시 재판 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
3	2011. 6. 5.	○ 국가보안법 위반범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낮은 형량에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
4	2011. 6. 7.	○ 국가보안법상의 형량보다 구체적 사건에서의 형량이 낮으므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
5	2011. 6. 8.	○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형량이 개별 사건마다 일관성이 없으므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
6	2011. 6. 12.	○ 투철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
7	2011. 7. 3.	○ 형사사건 전반에 있어서 음주로 인한 감경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의견
8	2011. 8. 14.	○ 제2기 양형기준의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중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이 기술유출범죄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질의

○ 처리결과

- 1~2번 의견 개진과 관련하여서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양형위원회와 관련이 없어 답변하여 드릴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
- 2~7번 의견 개진과 관련하여서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
- 8번 의견 개진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중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가 기술유출범죄 중 절도죄로 처벌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 것은 문의하신 내용과 같고, 절도죄가 성립하는 범위나 기술유출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하게 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으로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기술유출범죄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형에 관한 양형기준은 3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로 선정한 ‘지식재산권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이므로,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회의 시 문의하신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할 예정임

2.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가.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 질의내용

접수일자	질의자	질의 요지
2011. 7. 26.	대한한의사협회	○ 부정의료행위 유형에 관한 특별감경인자 중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에 ‘뜸, 수침’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므

		<p>로 철회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뜸, 수지침'은 한방의료행위 해당, 한의사가 시술 하더라도 뜸시술에 의한 의료사고비율 낮지 않음 - 현 기준이 공표될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해 질 우려 있음
--	--	--------------------------------------------------------------------------------------------------------------------------------------------------------------------------------------

○ 회신결과

- 다음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정식 회의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회신

○ 향후 논의

- 관련 규정

나.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단순한 건강검진, 성병검사, DNA 검사와 같이 해석상으로는 의료행위에 포함되지만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 볼 수 없거나, 뜸이나 수지침 등과 같이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를 의미한다.

- 향후 처리 방향

- 전문위원 회의에서 검토 후 위원회 보고하는 방안 등 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처리 예정

※ 자세한 질의 내용은 별첨 「양형위원회 제32차 회의관련 '식품·보건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제출」 과 같음

나. 기타 민원질의

○ 민원질의

순번	접수일자	질의 요지
1	2011. 7. 26.	○ 형평성이 없는 판결을 받아 억울하다는 내용의 의견개진
2	2011. 8. 4.	○ 제3기 양형기준안 송부 요청

○ 회신결과

- 형평성 없는 판결을 받아 억울하다는 민원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질의 내용이 양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재판에는 어떠한 기관도 관여할 수 없어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달라는 취지로 회신
- 3기 양형기준안은 제3기 양형위원회에서 설정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2014년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므로 양해하여 달라는 취지로 회신

<별지>

신임위촉 전문위원 후보자 프로필

1. 안효질(安孝秩)

	1964. 3. 10.생	
	출신지	인천 강화
	직 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학 력】

1983 ~ 1987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1988 ~ 1990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1990 ~ 1993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 박사 수료
1993 ~ 1999	독일 뮌헨대학교대학원 법학 박사

【경 력】

1993. 4. ~ 1999. 2.	독일 뮌헨 막스플랑크 지적재산권연구소 객원연구원
1999. 5. ~ 2001. 2.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원
2001. 3. ~ 2004. 8.	광운대 법과대 국제법무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2001. 5. ~	[現] 디지털재산법학회 이사
2001. 6. ~	[現] 한국저작권법학회 감사
2002. 3. ~	[現]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2002.12. ~	[現] 한국언론법학회 이사
2004. 9. ~	고려대학교 법과대 법학과 조교수
2006. ~	[現] (사)국제e-비즈니스학회 이사
2007. ~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09. 6. ~	[現] 대통령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2. 이수정(李水晶)

	1964. 2. 19.생	
	전문분야	사회심리학, 정서심리학
	직 위	경기대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학 력】

1982 ~ 1986	연세대학교 심리학 학사
1986 ~ 1988	연세대학교대학원 사회심리학 석사
1992 ~ 1994	미국아이오와대학교대학원 석사 Measurement & Statistics
1995 ~ 1999	연세대학교대학원 사회심리학 박사

【경 력】

연세대, 경희대, 경기대 강사

경기대 인문대 교양교직학부 교양학전공 조교수

한국심리학회 공공정책위원회 위원장

[現]한국경찰학회 편집위원

[現]한국경찰학회 이사

경기대 인문대 교양교직학부 교양학전공 부교수

[現]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이사

[現]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現]한국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이사

3. 정순섭(鄭順燮)

	1964. 5. 25.생	
	출신지	경남 진해
	직 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학 력】

1987. 서울대 법학과 학사
호주 University of Melbourne 법학석사
2002. 호주 University of Melbourne 법학박사

【경 력】

2002. 9. ~ 2003. 8. 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2003. 9. ~ 2006. 8. 인천대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2006. 9. ~ 2007. 8. 홍익대 법경대학 조교수
2007. 9. ~ 2010. 3.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
2010. 4. ~ [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08. ~ [現] 한국증권학회 이사

4. 최진녕(崔秦寧)

	1971. 3. 6.생	
	출신지	경북 의성
	직 위	법무법인 (유)로고스 변호사

【학 력】

- 1990. 대구청구고등학교 졸업
- 1998.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0. 미국 노스웨스턴 Law School (LLM)

【경 력】

- 1998. 제16회 법원행정고시 합격
- 2000. 광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4.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변호사 개업
[現] 법무법인 (유)로고스 변호사
- 2005. [現]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 IT법률컨설팅
- 2008. [現] 한국컴퓨터 사용자협회 법률고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 산하) 강의